



식품의약품안전처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」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(총리령 제 2156호)

1. 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」 일부개정령(총리령 제2156호)이 2026. 9. 29.자로 불임과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<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>

의료기관 등이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에게 발급하는 건강진단 결과서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, 성별 및 국적을 표기하도록 함으로써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건강진단 결과서의 발급을 신속하고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

2. 동 개정법령은 2026. 9. 29.자 관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(<http://www.law.go.kr>)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불임 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」 일부개정령 1부. 끝.

식품의약품안전처장

수신자 관계부처, 본부(61개 전부서),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(45개 전부서), 6개 지방청(54개 전부서), 지자체 및 관련 협회 등



주무관

손익재

연구관

공가

식품안전정책 전결 2026. 9. 29.

과장

최종동

협조자

시행 식품안전정책과-11080

(2026. 9. 29.)

접수

우 28159

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, 식품의약품안전처 / www.mfds.go.kr

전화번호 043-719-2014

팩스번호 043-719-2000

/ sij0301@korea.kr

/ 대국민 공개